

#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-8008-4105

## 개선배경



- 현재 임대사업자는 2개의 행정기관(지자체/세무서)에 각각 말소 신청해야 하므로 한 곳에만 말소한 경우 등록면허세(1만~4만원)를 부과 받아 민원 지속 발생
  - 해당 시·군·구에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시,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(소득세법)를 받아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

## 개선내용



- 임대사업자 말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등 마련
  -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으나, 말소시에서 미반영

### 개선전

- 임대사업자 말소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청



### 개선후

-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하여 세무서로 이송·처리하도록 시스템 마련
- 국세청과 협의하여 온라인(렌트홈\*)에서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('20년)

※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: 렌트홈([www.renthome.go.kr](http://www.renthome.go.kr))

## 개선효과



- 전국 임대사업자(41만명) 말소시 행정편의 제공
  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('20년 까지) 및 국세청과의 협의 후 시스템(렌트홈) 개선